

주식회사 누리펀딩대부은 근보증인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대부거래기본약관과 이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보증

팀원	팀장	본부장

근보증서

- ★ 연대보증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미리 뒷면 “연대보증인이 꼭 알아 두어야 할 사항”과 계약서의 내용을 잘 읽은 후 신중한 판단을 하시고,
 - ★ 굵은선 [] 으로 표시된(당사자란, 제1조 및 계약서 끝 부분)은 보증인이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누리펀딩대부 앞

2018년 6월 일

연대보증인_

8/16



연대보증인(이하 “보증인”이라 합니다)은 채무자가 주식회사 누리펀드대부(이하 “누리펀드대부”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제1조에서 정하는 범위의 모든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지며,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도 대부거래기본약관 및 채무자가 따로 누리펀드대부에 제출한 다음의 피보증 채무에 관한 거래약정서의 각 조항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아래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제 1 조 보증채무의 내용

- ① 보증인은 아래의 내용에 따라서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성명 : _____
1. 채무자 주소 : (2) 123-123



2. 피보증채무의 범위

피보증채무의 범위는 다음의 **특정근보증**에서 정한 채무(이자,지연배당금,기타 부대채무를 포함합니다)를 보증하기로 합니다.

특정근보증

채무자가 누리펀드대부(본·지점)에 대하여 다음 약정서에 의한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아래 약정의 상환기일 또는 거래기간을 보증인의 동의를 받아 연장한 때에는 그 채무 포함)

년 월 일자 약정서
년 월 일자 약정서

3. 근보증한도액

□금	<i>1000000000</i>	원
가. □	국 법화 금	

나. “가”목의 금액을 외화로 정한 경우 원화환산에 적용할 환율은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변제금을 수령할 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전신으로 송금하는 경우 적용되는 환율)로 합니다.

4. 근보증 결산기

누리펀드대부는 근보증 결산기를 정하는 다음의 세유형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설정자가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보증인은 **지정자지정형**에서 정한 날을 결산기로 하기로 합니다.

지정형	20	년	월	일
-----	----	---	---	---

자동화정형

정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보증약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보증인은 서면통지에 의하여 근보증 결산기를 지정할 수 있기도 하되, 그 결산기는 통지가 도달한 날짜로부터 14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지가 도달한 날짜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 다만, 5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증인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

장래지정형

정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보증 약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보증인은 서면통지에 의하여 근보증 결산기를 지정할 수 있기도 하되, 그 결산기는 통지가 도달한 날짜로부터 14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지가 도달한 날짜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

② 채무자의 누리펀드대부에 대한 채무 중 다음의 금융기관 eh는 이에 준하는 기관이 보증한 부분은 제1항 제2호 피보증채무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및 특별법에 의한 은행
2.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3.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 신용보조기금
4.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5. 보험업법에 의한 보증보험주식회사
6. 기타 은행과 협약을 체결하여 보증서를 발급하는 기관

제 2 조 상계의 제한

보증인은 주채무의 기일도래 전 또는 대부거래기본약관에 의한 기한의 이익상실(기업자금의 경우 할인어음의 환매청구사유 발생 포함)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상태에 도달하기 전에는, 채무자의 누리펀드대부에 대한 예금 기타의 채권에 의한 주채무와의 상계로써 누리펀드대부에 대항하지 않습니다.

제 3 조 다른 담보 · 보증약정과의 관계

① 보증인이 채무자의 누리펀드대부에 대한 같은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따로 담보를 제공하고 있거나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담보나 보증은 이 보증약정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이 약정에 의한 보증책임과 별개의 것으로 누적적으로 적용됩니다.

② 담보가치의 하락 등을 대비한 누리펀드대부의 요구에 의하여 같은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담보제공과 동시에 같은 금액으로 연대보증을 한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한 때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그 이행한 범위 내에서 다른 책임도 면합니다.